|  |  |  |
| --- | --- | --- |
|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지방세 세종 및 관련부가 감액징수 정책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5호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재세[2019]13호)에 근거하여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지방세 세종 및 관련부가 감액징수 정책 관련 징수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공고한다.  1. 신고표 조정  <자원세 납세신고표>, <도시유지건설세•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 신고표>, <부동산취득세 납세신고표>, <도농토지사용세 납세신고표>, <인지세 납세신고(보고)표>, <경작지점용세 납세신고표>를 조정하여 증치세소규모납세자 감액징수 혜택 신고 관련 데이터•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작성설명을 상응하게 조정한다(상세한 내용은 첨부 참고).  2. 납세자 유형 변화에 따른 감액징수 정책 적용시간의 확정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취득세, 도농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 교육비부가 및 지방교육부가를 납부하는 증치세일반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소규모납세자로의 전환등기를 이행한 경우 소규모납세자 전환 당월부터 감액징수 혜택을 적용받는다. 증치세소규모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일반납세자로의 전환등기를 이행한 경우 일반납세자 전환 당월부터 감액징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간 증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 인정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일반납세자로의 전환등기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전환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세무기관의 통보가 있은 후에도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전환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 경과 후 익월부터 감액징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감액징수 혜택 적용방식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여 감액징수 혜택을 적용받으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납세자가 감액징수 혜택을 제때에 적용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식  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자가 제때에 감액징수 혜택 적용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세금환급을 신청하거나 미래 납세기(納稅期)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시행기간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에 의해 조정된 신고표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감액징수비율 확정 규정이 공포된 당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다. 각 지방은 이 공고에 의해 조정된 신고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국가세무총국의 <자원세 납세신고표> 개정본 발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38호)에 의해 발표된 <자원세 납세신고표> 메인 양식, <국가세무총국의 <경작지점용세 관리규정(시범시행)> 발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호로 발표,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1호에 의해 개정)에 의해 발표된 <경작지점용세 납세신고표>의 사용을 중단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자원세 납세신고표  2. 도시유지건설세•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 신고표  3. 부동산취득세 납세신고표  4. 도농토지사용세 납세신고표  5. 인지세 납세신고(보고)표  6. 경작지점용세 납세신고표  국가세무총국  2019년 1월 19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小规模纳税人地方税种和相关附加减征政策有关征管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5号  　　根据《财政部 税务总局关于实施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的通知》（财税〔2019〕13号），现就增值税小规模纳税人地方税种和相关附加减征政策有关征管问题公告如下：  　　一、关于申报表的修订  　　修订《资源税纳税申报表》《城市维护建设税 教育费附加 地方教育附加申报表》《房产税纳税申报表》《城镇土地使用税纳税申报表》《印花税纳税申报（报告）表》《耕地占用税纳税申报表》，增加增值税小规模纳税人减征优惠申报有关数据项目，相应修改有关填表说明（具体见附件）。  　　二、关于纳税人类别变化时减征政策适用时间的确定  　　缴纳资源税、城市维护建设税、房产税、城镇土地使用税、印花税、耕地占用税、教育费附加和地方教育附加的增值税一般纳税人按规定转登记为小规模纳税人的，自成为小规模纳税人的当月起适用减征优惠。增值税小规模纳税人按规定登记为一般纳税人的,自一般纳税人生效之日起不再适用减征优惠；增值税年应税销售额超过小规模纳税人标准应当登记为一般纳税人而未登记，经税务机关通知，逾期仍不办理登记的，自逾期次月起不再适用减征优惠。  　　三、关于减征优惠的办理方式  　　纳税人自行申报享受减征优惠，不需额外提交资料。  　　四、关于纳税人未及时享受减征优惠的处理方式  　　纳税人符合条件但未及时申报享受减征优惠的，可依法申请退税或者抵减以后纳税期的应纳税款。  　　五、施行时间  　　本公告自2019年1月1日起施行。本公告修订的表单自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减征比例的规定公布当日正式启用。各地启用本公告修订的表单后，不再使用《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修订后的<资源税纳税申报表>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38号）中的《资源税纳税申报表》主表、《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耕地占用税管理规程（试行）>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2号,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1号修改）中的《耕地占用税纳税申报表》。  特此公告。  附件：  1.资源税纳税申报表  2.城市维护建设税 教育费附加 地方教育附加申报表  3.房产税纳税申报表  4.城镇土地使用税纳税申报表  5.印花税纳税申报（报告）表  6.耕地占用税纳税申报表  国家税务总局  2019年1月19日 |